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126-14

# 2011 공익법인 세무안내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126-14

#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1. 2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공익법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이용한 조세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여러 의무사항과 그 의무이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산세,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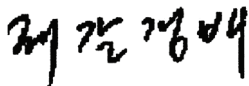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익법인 세무안내’에는 최신 세법개정사항, 중요한 법령해석 사례 및 공익법인 등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 등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익법인 관계자 여러분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공익법인의 세무처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1. 2.

법인납세국장 



# 목 차

## I |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 4
2. 공익사업의 종류 ◆ 4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 구분 ◆ 13

## II | 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 16
  - 가. 수익사업의 범위 ..... 18
  - 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 23
  -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26
  - 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 39
  - 마. 수익사업 개시 신고 ..... 40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 46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 52
  - 가. 출연재산이란 ..... 52
  - 나.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52
  - 다.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 54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 58
  -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58
  -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60

### Ⅲ | 공익법인의 남세업력의무

1. 보고서 등 제출의무 ◆ 62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64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기준 ◆ 66
4.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72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73
6. 결산서류 공시의무 ◆ 76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 ◆ 78
8.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 80

### Ⅳ |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 85
2. 출연재산 매각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 91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97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 105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123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 126
7.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시 지켜야 할 일 ◆ 127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 130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 131

### Ⅴ | 부 록

1.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 135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및 보고서식 ◆ 151

## 일러두기



편의상 현재 시행중인 법령 명칭을 아래와 같이 약어로 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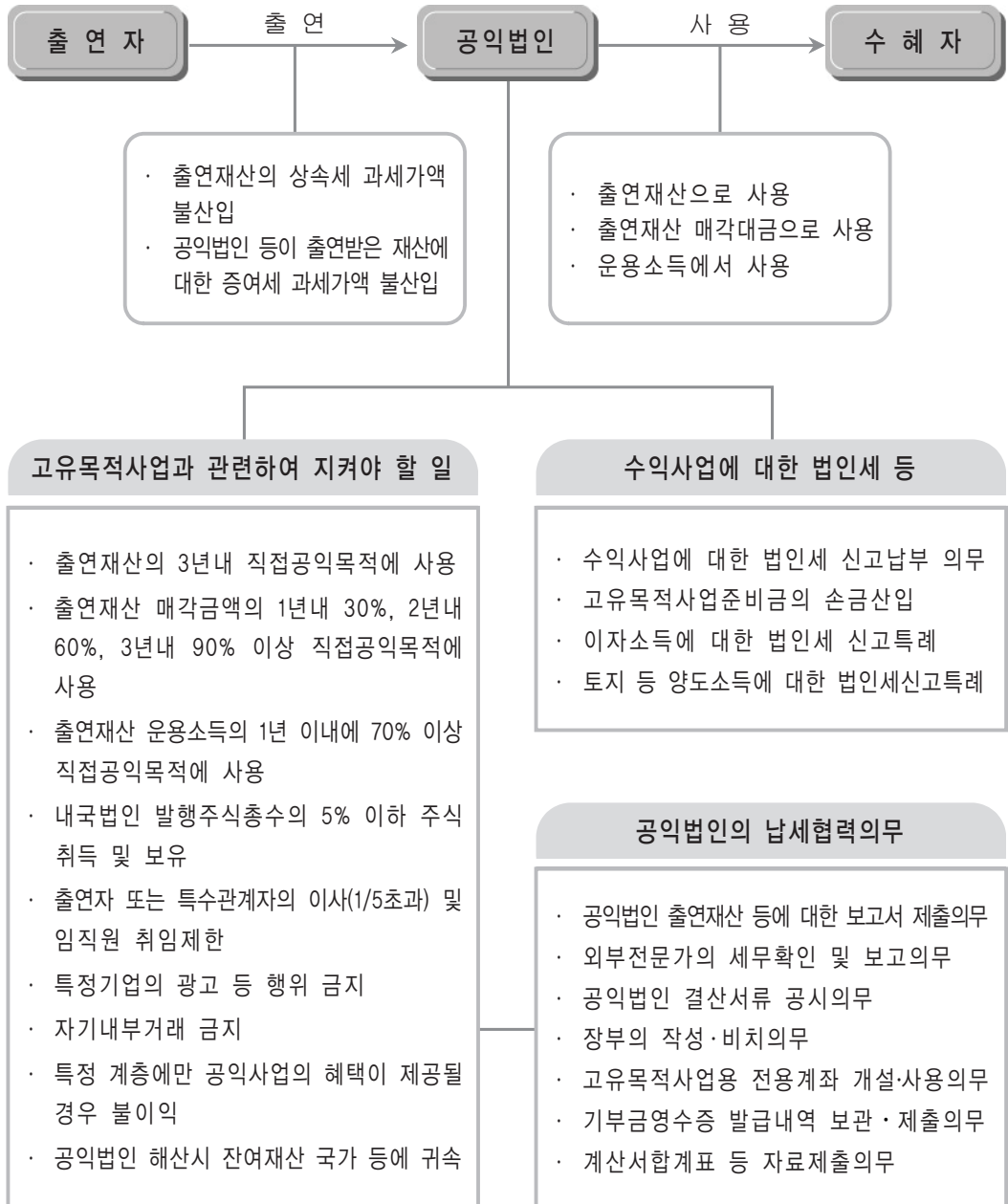
- 법 법 ▶ 법인세법
- 법 령 ▶ 법인세법 시행령
- 법 규 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 통 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 소 법 ▶ 소득세법
- 소 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소 규 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 부 법 ▶ 부가가치세법
- 부 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 규 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 통 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 상 증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증 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 증 규 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 증 통 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 <적용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 상증법 § 48 ② 4호



본 책자에 실린 법률 및 시행령 등 조문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법전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의 납세 의무 체계



※ 고유목적사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 I

##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 4
2. 공익사업의 종류 / 4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 13

# I. 공익법인이란

## 1.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다른 비영리사업과 구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2. 공익사업의 종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령 §12)

###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재삼 46014-1914, '95. 7. 25)
- ▶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 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재산-2661, '08. 9. 4)
- ▶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공익법인(종교단체)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함  
(서일46014-11530, '03. 10.28)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 「사립학교법」 시행일('63. 6. 26)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화교소학교”는 공익법인에 해당안됨  
(재삼 46014-1755, '98. 9. 14)
- ↳ '01.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이 신설(초·중등교육법 §60의 2)됨에 따라 '01. 4월 이후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에 해당됨
-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재산-439, '10.06.25)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6 1. 공익법인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기초노령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범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다음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 포함)

- ①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
- ② 연구비·연구구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
- ③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④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⑤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상기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함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예술 및 문화사업의 범위가 넓어 공익성이 낮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으로 분류될 개연성이 높아 '00. 1. 1 일 이후 설립하는 것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됨

다만, '99. 12. 31일 개정 전부터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지정현황》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1-144호('01. 12. 31)

- (재)청암언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 (재)박건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2-11호('02. 1. 31)

- 운우관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

☞ 상증령 §12 제9호의 신설('01. 12. 31)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더라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02. 1. 1일 이후 공익법인에 해당됨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봄  
(재산-598, '10. 8. 17)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환경보호업무는 영리목적사업 아니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함  
(재재산46014-273, '01. 11. 2.)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증법기본통칙 16-12...1]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12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 : '02.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07. 2. 28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법령 §36 ① 1호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 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10. 12. 31 현재 1,931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책 - 세제, 법령 - 공고란에 게시)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법규칙 §18 ①)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산하조직 포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갯생보호공단,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대한 결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원단체 포함) 및 청소년단체, 한국학술진흥재단,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도서관·작은도서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산하조직 포함),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학진흥재단, 환경보전협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 추진협의회·환경운동연합,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국가유공자단체,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정신보건시설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산재 의료관리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스키야트주관단체, 한국 청소년연맹,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외 동포재단,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산지보전 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기존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정), 한국소방 안전협회, 향민운송사업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공탁금관리 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 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 국민연금 공단, 한·아시아센터, 사방협회, 시장경영지원센터, 한국학교 등

▶ 소령 §80 ① 5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범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10.12.31 현재 169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공고란에 게시)

10

1호 내지 5호·7호 또는 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증규칙 §3

[공익법인 등의 범위]

- 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74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③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제3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비영리교육재단)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 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⑧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 ⑨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 ⑩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 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 조특법 §73 ①

## 〔특례기부금의 범위〕

- 문화예술진흥기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 독립기념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문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한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국민신탁법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11호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

☞ '10. 12. 27 삭제되었으며, 부칙(법률 제10406호)에 의해 '11. 7. 1부터 폐지

- ◎ 공익사업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파세가액 산입함.(대법96누 7700. '96. 12. 10)
- ◎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재산439, '10. 6. 25.)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호 및 제9호 등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법인2008-28, '08. 11. 20)

- ◎ 재단법인 xx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 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법인-1032, '10. 11. 2.)
- ◎ 법인격이 없는 장학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장학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서면4팀-1013, '08. 4. 22)
- ◎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1604, '02. 11. 28)
- ◎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재산명세의 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2066, '04. 12. 16)
- ◎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3510, '06. 10. 25)
-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가맹단체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156, '02. 9. 19)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

###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이 중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민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열거된 학술·종교·자선사업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유형을 열거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의 구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일 뿐입니다.

###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구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Ⅱ

# 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 16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 46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 52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 58

## II. 공익법인과 세금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은 사실상 국가 또는 사회전체가 해야 할 사업이므로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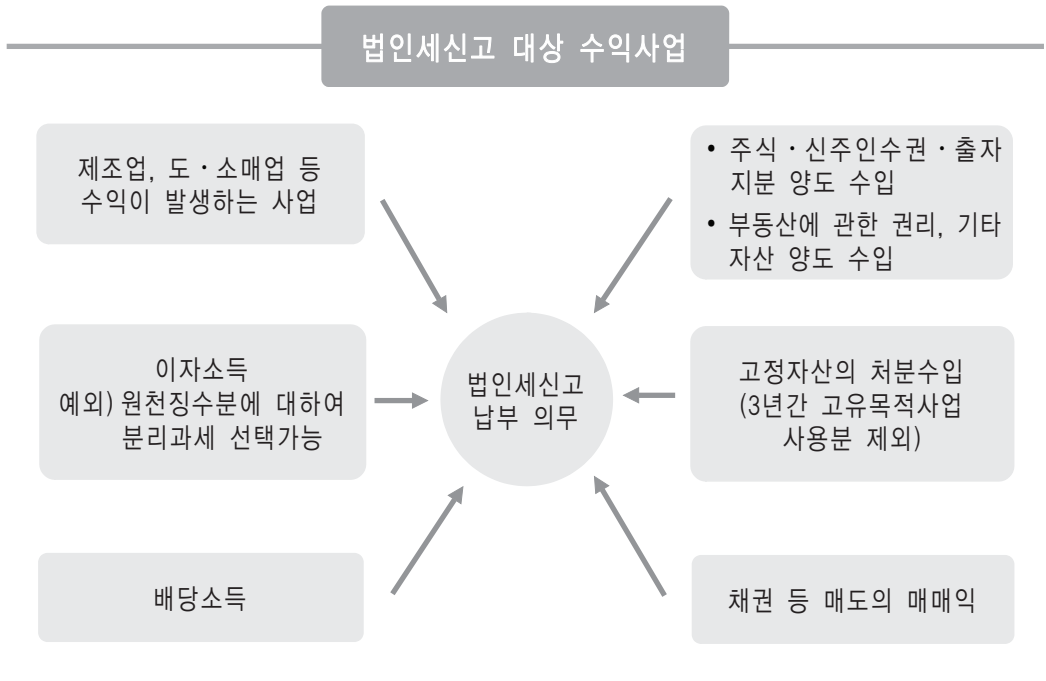
그러나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 및 부의 편법 상속 등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정관의 내용·임원의 임면·이사회 운영·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 수입'이 추가 되었습니다. (법법 §3③. 6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등
  -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법법 §62의2)
    - 수익사업 중 사업소득(아래 “가”의 ①)이 없는 공익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함으로써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9쪽 참조)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법 §55의 2)
- \* '09.3.16.부터 '12.12.31.까지 양도한 자산과 '09.3.16.부터 '12.12.31. 사이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됨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은 제외)

### 가.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법법 §3 ③)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은 제외합니다.(법령 §2 ①)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영 §2 ① 2의2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 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마목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2011.1.1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 연금 및 공제업 중 영 §2 ①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 사회보장보험업 중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12 ①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소속단체는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 등을 운영하는 사업 등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사업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사업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 ☞ '09.2.4.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 ☞ '11.1.1.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제외
-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봅니다.

⑥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 '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⑦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관련예규**

- ◎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1381, '09. 12. 04)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인세과-1378, '09. 12. 4)

-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OO(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재법인-635, '08. 10. 17)
- ◎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팀-1068, '08. 6. 2)
-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당해 법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임  
(서면2팀-862, '07. 5. 07 재법인-30, '05. 1.12)
- ◎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가능함 (재법인46012-151, '03. 9. 19)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2053, '03. 11. 29)
- ◎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0302, '01. 10. 5)
- ◎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팀-356, '07. 3. 2)
- ◎ 비영리재단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법인 46012-474, '99. 2. 4)

-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 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라 함은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법인 46012-828, '99. 3. 6)
  - ◎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재법인-667, '04. 12. 10)
  - ◎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팀-820, '05. 6. 15 국심2003서614, '03. 4. 22)
  - ◎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모든 수익이 안양시에 귀속되므로 대행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중2035, '06. 10. 12)
  - ◎ 재법인-535('09.6.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재법인-866, '10. 10. 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재법인-535('09.6.9)
- ◎ 귀 질의의 주택이 담임목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주택이 교회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971, '10. 10. 25)

## 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법법 §113, 법규칙 §75, §7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모두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여야 합니다.

### 1)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손익의 구분경리

#### ① 개별손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합니다.

#### ② 공통손익금

- 수익 또는 비용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구분계산합니다.

◇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cf)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함

-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함 (법통칙 113-156...5)
-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법통칙 113-156...1)
-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영 제11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액에 대한 수입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통칙 113-156...7)

3) 수익사업의 자본금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세무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수익사업의 자본금

= 수익사업 자산합계액 - 수익사업 부채 (충당금 포함) 합계액

#### 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의 자본원입(법규칙 §76③, ④)

##### ①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하며,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함
-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법통칙 113-156…2)

##### ②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함

##### cf) 법통칙 113-156…3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된 금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 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 의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526, '09. 5. 4)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임 (서면2팀-1378, '06. 7. 20)

◎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867, '07. 5. 8)

###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법 §29)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등 × 100%
  -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또는 80%)
  - cf)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100%, 80%)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령 §56⑤)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법법 §29①)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구 분		고유목적사업 준 비 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설정대상 제외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3) 기타단체			

#### ※ 설정제외법인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 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통칙 29-56...1)

- ② 과세표준신고 특례적용 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받는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46012-1004, '00.4.22)
- ③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 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제공받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
- ④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13.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조특법 §104조의7 ②)

※ 지정기부금으로 처리시 손금산입한도

-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령 §36 ②)
- 손금산입 한도액(법법 §24 ①)  
 = {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 금액) - 법정기부금 - 조특법상 기부금 - 이월결손금} × 5(10%\*)
- ☞ '11.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는 10% 적용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 (법법 §29 ①)

가) 법인세법상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

①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 i) 소득세법 §16 ① 1호 ~ 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16 ① 11호 ~ 12호의 이자소득금액 제외(예, 비영업대금의 이익)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수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포함

- 법령 §2①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채권투자 등 금융 자산 운용소득 포함⇒재법안-270('05. 4. 25.)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임
  - ii) 소득세법 §17 ① 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에 의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
  - iii)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 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②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법령 §56 ③)
- ①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를 곱하여 산출함
  - cf)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 배당소득금액
    - △ 특별법인의 용자금 이자금액
    - △ 이월결손금
    -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설정대상금액(조특법 §74)
- ①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 i)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ii) 사회복지법인
    - iii)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 iv)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 v)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1-11호(국립발레단, 국립 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vi) 조특법 §73 ① 15호 각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2세계 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 ②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1.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종전 70%에서 '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60% 변경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09.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으로 인한 익금환입액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 통칙 29-56...2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 포함되었으나, '07.3.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서식 개정을 통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서 제외('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 (원칙: 결산조정, 외감법인 신고조정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법 §29 ①)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법 §61 ①)

- 신고조정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법 §61 ①)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 (비용계정)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고정부채)	(차)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잉여금 계정)
[세무조정]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손금산입(△유보)

※ 임의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서이46012-11844, '03. 10. 23.)

※ 경정청구에 의한 추가설정 가능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46, '98. 1. 8.)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통칙 29-56...3)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p><b>【수익사업】</b>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고정부채)                      (대) 현 금 800</p> <p><b>【비수익사업】</b>                      (차) 현 금 8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차) 고유목적사업비 800                      (대) 현 금 800</p> <p>⇒ [세무조정]없음</p>	<p><b>【수익사업】</b>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잉여금계정)                      (대) 현 금 800</p> <p><b>【비수익사업】</b>                      (차) 현 금 8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차) 고유목적사업비 800                      (대) 현 금 800</p> <p>⇒ [세무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800                          익금산입(유보)</li> <l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                          전출 800 손금산입(기타)</li> </ul>

※ 준비금의 사용순서 등 (법법 §29②)

- ①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 ②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법령 §56⑥)

- 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 ②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 ③ 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법규칙 §76 ④)
- ④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

◇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 i)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ii)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iii)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cf) ii)와 iii)의 내용은 '07. 3. 30.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함
- '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대여하는 금액
- ⑥ 농협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⑦ 지정기부금의 지출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법통칙 29-56...6)

구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100 구입	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100/	현 의료발전준비금	100 100	자산(별도관리)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의료발전준비금	20/ 20	감가상각누계액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20	의료발전준비금 20 /자산 20
50 처분	현 감가상각누계액 처분손실 의료발전준비금	50/ 20 30 80	자산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100 80	의료발전준비금 80 /자산 80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b>【수익사업】</b>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고정부채)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00 (수익항목)  ⇒ [세무조정] 없음	<b>【수익사업】</b>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잉여금 항목)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200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200 익금산입(유보)

※ 익금산입 사유 (법법 §29 ③, ④)

- ① 해산한 경우(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면서 법인의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함)  
 ☞ 상기 단서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됨
-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법통칙 29-56...5)

※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되는 경우 (법법 §29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위 익금산입 사유 ① ~ ⑤ 중 ④와 ⑤의 경우에만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법령 §56⑦)

○ 이자상당가산액 = 제1호 × 제2호

- 제1호 :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제2호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계산사례**

○ 2005년 12월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법인세과세표준 1억, 산출세액 13백만원)에 5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였고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4천만원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계산〉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 ① 미사용액 1천만원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  
 $(1억 + 1천만원) \times 25\% = 15,500,000원$   
\*2005년 법인세율 13%(1억 초과분 : 25%)
- ② 미사용액 1천만원을 손금산입한 경우의 당초 법인세액 : 13,000,000원
- ③ 법인세액의 차액  
 $15,500,000 - 13,000,000 = 2,500,000원$
- ④ 이자상당액 계산 =  $2,500,000 \times (365 + 365 + 365 + 366 + 365) \times 0.03\% = 1,369,500원$

〈결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천만원 익금산입하고, 별도로 1,369,500원 추가 납부함



## 관련예규

- ◎ 비수익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에 해당여부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법인-31, '11. 1. 14)
- ◎ 의료법인의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에 해당여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753, '10. 8. 9)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도 2009.1.1.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763, '09. 7. 3)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 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317, '09. 11. 27)

- ◎ 학교법인이 연구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구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을 비영리사업회계인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24, '10. 1. 12)
- ◎ 사립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시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4050, '99.11.22 서면2팀-341, '06. 2. 14 서면2팀-1370, '06. 7. 20)
- ◎ 익금불산입 배당수입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아님  
 2007.12월 법인세법 개정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금액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배당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재법인-673, '08. 10. 28)
-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사례 (국심2004구286, '06. 3. 14)
-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서면2팀-477, '05. 3. 31)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재법인46012-115, '01. 6. 12)

- ◎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준비금 사용에 해당안됨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법 §29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수익용)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음  
(재법인46012-81, '03. 5. 12. 서면2팀-1347, '06. 7. 14)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 46012-2063, '00. 10. 7)
-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함  
(서면2팀-1115, '05. 7. 18)
-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이46012-10969, '02. 5. 7)
-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됨 (서면2팀-786, '06. 5. 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시 우선순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844, '04. 4. 22)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46012-2758, '98. 9. 25, 서이46012-10111, '03. 1. 16)

◎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592, '06. 4. 5)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은 준비금 사용에 포함 안됨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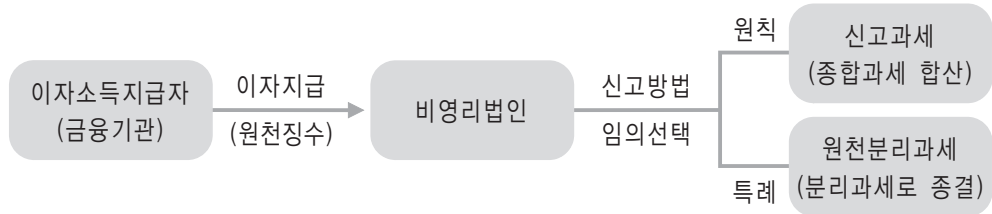
(법인46012-372, '00. 2. 9)

◎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위한 차입금의 상환은 준비금 사용에 포함 안됨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 않음

(제도46012-12671, '01. 8. 16)

## 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 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법 §62)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법령 §99 ②)

- ◎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사업연도마다 선택적용 가능하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서이46012-10574, '02. 3. 21)
- ◎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637, '10. 7. 8)
-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법인세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를 요구할 수 없음 (국심1999구2217, '03. 3. 29)
- ◎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재정책-708, '09.7.9 )

##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법규칙 §82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

-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규칙 별지 56호 서식)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법규칙 별지 27호 서식)
- ③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 ◎ 부동산임대소득(수익사업)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법인세법 제60조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서면2팀-1355, '06. 7. 19)

## 마.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법 §110)

- cf) 수익사업개시신고서가 별도서식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무상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통한 사업자등록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 작성사례

○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이자소득외의 수익사업이 없으며 A장학재단과 지점 A1, A2의 2010사업연도('10 1. 1 ~ '10 12. 31) 중 이자소득 및 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A장학재단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 이자수익 내역

구 분	수 입 이 자	원천납부액	실 수 입 액
합 계	100,000,000	14,000,000	86,000,000
A 장학재단	60,000,000	8,400,000	51,600,000
지점 A1	30,000,000	4,200,000	25,800,000
지점 A2	10,000,000	1,400,000	8,600,000

- 직전연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	잔 액
2009년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A장학재단은 금년도 발생한 이자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

- A장학재단은 2010년에 지점 A1의 내부수리비 2천만원,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으로 3천만원,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용경비로 4천만원을 사용하였음

〈참고〉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①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②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 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②전자우편주소
③법인명 (재) A장학재단	④대표자성명 홍길동
⑤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⑥사업연도 2010.1.1~2010.12.31
⑦전화번호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자소득금액계	100,000,000		
	⑨준비금손금산입액	100,000,000		
	⑩기부금손금산입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⑧-⑨-⑩-⑪)			
	⑬비과세소득			
	⑭과세표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율			
	⑯산출세액			
	⑰가산세액			
	⑱가감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중간예납세액		
		⑳원천납부세액	14,000,000	
		㉑( )세액		
		㉒계(⑲+⑳+㉑)	14,000,000	
	㉓추가납부세액			
	㉔차감납부할세액 (⑱-㉒+㉓)	△14,000,000		
㉕분납할세액				
㉖차감납부할세액(㉔-㉕)	△14,000,000			

국세환급금	㉗예입처	공익은행	종로 (본)지점
계좌신고	㉘예금종류	보통예금	
	㉙계좌번호	123-12-1234567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2010.1.1.	<b>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b>	법 인 명	(재) A장학재단
	~ 2010.12.31		사업지등록번호	123-82-12345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및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제1 항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⑥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
	100,000,000	-	100,000,000	100,000,000	-
⑦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제 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⑧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	⑨ 손금산입률	⑩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	⑪ 당기 계상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⑪ = ②)	⑫ 손금 부인액 (⑪ - ⑩)
-	0	100 ----- 100	100,000,0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잔 액 (⑭ - ⑮ - ⑯)	
				⑱ 5년 이내분	⑲ 5년 경과분
2010	100,000,000	-	70,000,000	30,000,000	
2009	50,000,000	30,000,000	20,000,000		
(당 기)					
계	150,000,000	30,000,000	90,000,000	30,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사업 연도	2010. 1. 1. ~ 2010.12.31.	<b>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b>	법인명	(재) A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지출내역				④ 금액	⑤ 비고
① 구분	② 적요	③ 지출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 지정기부금					
II. 고유목적사 업비	지점 내부수리비	○○공사	104-02-xxxxxx	20,000,000	20,000,000
	장학금 지급	김우등	820101-xxxxxxx	10,000,000	10,000,000
	장학금 지급	박철실	830301-xxxxxxx	10,000,000	10,000,000
	장학금지급	최고수	830701-xxxxxxx	10,000,000	10,000,000
III. 고유목적사 업 관련 운영경비	직원 급여	홍길순	700101-xxxxxxx	23,000,000	23,000,000
	사무실 월세	○○빌딩	106-03-xxxxxx	12,000,000	12,000,000
	전화요금	○○통신	106-85-xxxxxx	2,000,000	2,000,000
	전기요금등	○○전력	112-85-xxxxxx	3,000,000	3,000,000
IV. 기 타					
⑥ 계				90,000,000	90,000,000

**작성 방법**

1.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 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2. ②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 (임원과 직원 급여 구분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4. ④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5. ⑥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의 ⑩란의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사업 연도	2010.1.1. ~ 2010.12.31.	<b>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b>	법인명	(재)A장학재단
	사업자등록 번호		123-82-12345	

**원천징수 명세내용**

①적요	② 원천징수의무자		③ 원천징수일	④ 이자금액	⑤세율	⑥법인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예금이자 (A재단)	xxx-xx-xxxxxx	○○은행	2010.x.x	60,000,000	14%	8,400,000
" (A1)	xxx-xx-xxxxxx	△△은행	2010.x.x	30,000,000	14%	4,200,000
" (A2)	xxx-xx-xxxxxx	□□은행	2010.x.x	10,000,000	14%	1,400,000
합계				100,000,000		14,000,000

## 2.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제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주택·비사업용토지, 지가급등지역 안의 부동산(법법 §55의2 ① 1호), 특정주택(법법 §55의2 ① 2호) 및 비사업용 토지(법법 §55의2 ① 3호)의 양도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한시적 적용특례('10.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 :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주택('12. 12. 31. 까지 양도시 세율 10%)
- 특정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
  - '09. 3. 16. ~ '12. 12. 31. 양도시 한시적 적용배제
  - '09. 3. 16. ~ '12. 12. 31. 취득분은 이후 양도시 적용배제

### ◇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법법 §60 ①)하고,
    - 지정지역·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법 §55의2) 추가 납부
      - ☞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한시적 적용배제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선택적용 가능)
    - 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방법 (법법 §62의2)
      -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고
      - 지정지역·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과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법법 §55의 2)
        - ☞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한시적 적용배제
- \*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 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begin{aligned} \text{각 사업연도소득} &= \text{익금} - \text{손금} \\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등} \end{aligned}$$

-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합니다.
- 취득가액 등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법 §60)

## ㄴ. 지정지역·지가급등지역 소재 토지·건물 등 양도의 경우(법법 §55의2)

양도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이거나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ㄱ”의 법인세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다음 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의 토지 등(지정지역·지가급등지역의 토지·건물)
  - = 양도소득 × 10/100 (‘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 ☞ 참고로 주택의 지정지역(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말하며, 토지의 지정지역 및 지가급등지역은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음
- ②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2호의 주택(주택의 범위는 법령 §92의2 참조)
  - = 양도소득 × 30/100 (미등기인 경우 40/100)
  - ☞ '05.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2009. 3. 16~2012. 12. 31. 양도시 한시적 적용 배제 및 2009. 3. 16~2012. 12. 31. 취득분 양도시 적용배제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과세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 일정호\* 이상의 국민주택 임대법인이 일정기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 서울특별시(5호), 인천광역시·경기도(3호), 수도권 밖(1호)
    - \*\* 서울특별시(10년), 그 외(7년) ☞ '10. 9. 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2.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06. 1. 1 이후 사용승인(검사)분부터 적용)
    -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연면적 149㎡ 이하일 것
    -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중에 취득·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0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연면적 149㎡ 이하일 것
    -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매입임대주택으로서('08. 6. 1. 0. 현재 미분양분으로 '08. 6. 11. ~'09. 6. 30. 최초 분양계약 체결후 계약금 납부한 주택에 한함)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연면적 149㎡ 이하일 것
    -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10. 2. 11. 까지 직접 취득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며 그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6.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인 주택
  7. 신탁업자가 '10. 2. 11. 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채권발행을 발행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8.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11. 4. 30. 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10. 2. 11.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그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9. 신탁업자가 '11. 4. 30. 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유동화 할 것
  -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10. 2. 11.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그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 8, 9번은 '10. 6. 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0. 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무상임대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11. 저당권 실행·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으로 3년 미경과 주택
  - ☞ '06.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

③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전·답·과수원, 임야 등)  
 = 양도소득 × 30/100 (미등기인 경우 40/100)

☞ '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2009. 3. 16~2012. 12. 31. 양도시 한시적 적용배제 및 2009. 3. 16~2012. 12. 31. 취득분 양도시 적용배제

## 2)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로 신고하는 방법(법법 §62의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ㄱ. 신고특례 적용대상 자산

① 토지·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시장상장주식 등으로서 발행주식 총액의 3% 이상(코스닥 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5%)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코스닥시장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50억)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

③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 비상장주식

④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 ㄴ.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양도 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 신고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begin{aligned} \text{과세표준}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 \text{자본적지출액} - \text{양도비} - \text{장기보유특별공제} \\ &\quad - \text{양도소득기본공제} \end{aligned}$$

☞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법법 §62의2④, 법령 §99의2③)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다만,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제외)에는 당해 재산을 출연한 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ㄷ. 세액의 신고 납부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cf)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내

당해 사업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법법 §62의2 ⑧ 단서규정)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령 §99의 2 ⑤)

#### ㄹ. 양도자산이 지정지역·지가급등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상기 “1)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의 “ㄴ. 지정지역·지가급등지역 소재 토지·건물 등 양도의 경우”의 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법 §62의2②)



#### 관련예규

- ◎ 비영리내국법인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안됨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290, '09. 11. 17)
- ◎ 비사업용 토지를 '09. 3. 16부터 '10.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1095, '10. 11. 26)
- ◎ 내국법인이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10.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241, '10. 3. 17)
- ☞ '1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유예기간을 '12.12. 31까지로 적용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 가. 출연재산이란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으로서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상증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48 ② 본문단서, 상증령 §38 ①)

#### 나.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 §16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당해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1)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2)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상증령 §13 ②)

- ☞ 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
- ☞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등에서 물러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3)
- ☞ 영 제1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이사에는 이사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4 ②)

## 3) 출연 시한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할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할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개정('08.12.26)

다만, 법령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와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하면 됩니다.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상증통칙 16-13...2 ①)

#### 4) 상속재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자세한 사항은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중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참조

#### 다.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증법 §48 ①)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총발행주식수의 5% (또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나”의 “4)”의 경우과 같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등을 과세가액 불산입받은 공익법인 등이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사업을 성실하기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참조



## 관련예규

### ◎ 비상장주식(5% 초과함) 매각대금을 출연시 과세 여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511, '10. 7. 14)

### ◎ 의료기기 취득목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시 과세 여부

의료기기 등의 취득목적으로 기부받은 현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것임. 다만,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산-932, '09. 5. 14)

### ◎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서면4팀-1274, '08. 5. 26)

cf)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

### ◎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189, '05. 11. 15 외 다수)

◎ 종교헌금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 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서면4팀-577, '08. 3. 6)

◎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은 증여 아니나,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서면4팀-982, '06. 4. 17)

◎ 유언이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을 따르지 않은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대법2005두3271, '05. 6. 23)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출연한 것에 대해 상속세 부과한 사례

실제 출연하지 않은 채 출연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가 되었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야 출연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출연금인 민법상 자필증서, 녹음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에 의하여 출연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연금의 출연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나 유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국심2005서3786, '06. 4. 7)

◎ 자필 유언증서에 의한 출연임을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한 사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동 유언서에는 위 요건 중 주소가 누락되었는 바,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경우에는 유언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하여 자필유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등으로 볼 때, 동 유언서는 자필 유언증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국심2007서449, '07. 8. 6)

- ◎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명의 재산을 출연했음에도 과세가액불산입한 사례

상속인 명의의 현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정산함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모두 끝났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이후 당해 금액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 (국심2005중1885, '05. 12. 30)
- ◎ 공익법인 아닌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4팀-1189, '05. 7. 12)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00. 1. 1 일 이전에는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0. 1. 1 이전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국심2005구311, '05. 4. 22)
- ◎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2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4팀-1675, '07. 5. 21. 외 다수)
- ◎ 조직변경과정에서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의 명의로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팀-1656, '05. 10. 17)

##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법 §12 ① 17호, 부령 §37)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합니다.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함)
- ③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 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④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⑤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 관리용역

-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사) 한국방송작가협회                      - (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사)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사)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 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부통칙 12-37-2]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429, '10.1.11)

- ◎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상증세법상 종교·교육 등 공익목적사업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1452, '10. 11. 4.)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HACCP 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식약청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진흥원이 식약청에 제공하는 HACCP관리 지원사업 수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재부가-484, '09. 7. 13)
- ◎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부가-175, '08. 12. 16)
- ◎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 등이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수익사업관련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3팀-801, '04. 4. 23)
- ◎ 공익법인 소유의 체육시설(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등)을 일반인에게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심2005서3130, '06. 6. 2)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법 §12 ② 4호)**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합니다.

-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지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812, '09. 6. 15.)

# Ⅲ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보고서 등 제출 의무 / 62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64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기준 / 66
4.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72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73
6. 결산서류 공시의무 / 76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 78
8.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 80

##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1.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령 §41)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제출 서류

##### 1)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한함)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 신설(상증령 §41①)

##### ○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결산보고서 주무관청 제출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동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 위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① 고유목적사업부문 ② 수익사업부문 ③ 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함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07. 2. 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학교법인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의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재산-3958, '08. 11. 25)

##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
- ②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 서식)
- ③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 서식)
- ④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 서식)
- ⑤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
- ⑥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 서식)
- ⑦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 서식)
- ⑧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 나. 제출기한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상증령 §41①, 상증규칙 §11)

☞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예시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정부의 회계연도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회계연도는 1.1 ~ 12.31임)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의 학년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정부의 회계연도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 정부의 회계연도 (다만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은 사립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름)
- 산학협력단 : 당해 대학의 회계연도

**다.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③)**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2.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증법 §51)**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작성·비치된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그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합니다.

#### 나.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가산세 (상증법 §78 ⑤)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당해연도 수입금액} + \text{출연재산가액}^1) \times 0.07\%$$

-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 ('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상증령 §80 ⑨)

다음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법법 §112 단서)

###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기준 (상증법 §50)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 '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산총액 판정시 부동산(토지·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 '07. 12. 31. 개정 내용

- 세무확인대상 확대 :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세무확인주기 단축 : 매 2년 → 매 사업연도별
- 외부전문가 축소 : 3인 → 2명
- ☞ '0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 ②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③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 다. 보고 기한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 (상증법 §78 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당해연도 수입금액} + \text{출연재산가액}^1) \times 0.07\%$$

-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함. ('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 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수입금액" 에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 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재산-168, '09. 9. 9)

#### 마. 외부전문가 (2명 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 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설립자(이하 "출연자 등") 또는 임직원
  - \* 출연자 :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 제외
  - \* 임직원 :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함

2.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 구 상증법 시행령('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3.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함)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5.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 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6. 기타 당해 공익법인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cf.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분야 세무대리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임 가능(입법예고시 접수된 납세자의 의견 수용)

## 바. 세무확인할 사항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등

### ②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

## ③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 초과 여부 및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여부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홍보 여부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준수 여부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 ④ 세무확인 보고

- 공익법인세무확인규정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별첨)

**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외부전문가는 위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외부전문가의 의무 및 제재**

외부전문가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의무위반시에는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하여야 하며 ('07. 5. 1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외부전문가는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관련예규

- ◎ 출연받을 때 증여세 납부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재산-540, '10. 7. 26, 재재산46014-321, '95. 8. 17)
-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세무확인 면제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재산-2790, '08. 9. 11)
  - ☞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학교법인이 자진 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면제
- ◎ 자산총액의 의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서 말하는 자산총액은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서면4팀-793, '97. 5. 23 재삼46014-1295, '97. 5. 23)
  - ☞ '0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 10억 기준임에 주의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됨
  -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2000두5944, '02. 4. 12),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세무확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대구지법2004구합420, '04. 12. 16)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072, '04.12.17)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부과 여부
  -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만분의 7을 곱하여 산정 (국심2003서3502, '04. 4. 20)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재산가액 '누계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연간'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구2247, '03. 10. 15)
- ◎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세무확인 대상 아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안됨 (재삼46014-174, '99. 1. 25)
- ◎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4팀-1101, '07. 4. 4)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및 보고 시기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 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인 '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 것임(재산-63, '09. 1. 8)

## 4.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50③)

### 가. 개 요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

### 나. 제외 대상

다음의 공익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상증령 제12조 제1항(종교) 및 2호(교육)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 다. 감사보고서 관할 세무서 제출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1.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등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 실시' 규정 삭제

### 라.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여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으나 2007. 12. 31일 개정된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5% → 10%),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30% → 50%)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익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재산-124, '10. 2. 26)

## 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상증법 §50의 2)

### 가. 개 요

공익법인은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전용계좌란 i)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ii)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의미

### 나.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①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③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 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 다.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전용계좌 사용대상거래가 아닌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거래건당 금액(VAT 포함)이 1만원('08.12.31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라.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법 시행당시('08. 1. 1.) 공익법인에 해당되거나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전용계좌의 개설·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 및 민간연구개발(수익사업 관련) 목적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수입계좌 등은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외의 개설사용 의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재산-3781, '08. 11. 14)

#### 마. 의무위반시 가산세

- ①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②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Rightarrow \text{MAX}(i, ii)$

- i.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당해 공익법인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차감)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ii.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바. 적용시기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는 '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의무위반시 가산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관련예규

### ◎ 학교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3956, '08. 11. 25)

### ◎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정기예금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2789, '08. 9. 11)

## 6. 결산서류 공시의무 (상증법 §50의 3)

### 가. 개 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http://npoinfo.nts.go.kr>)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 나.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 ①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②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을 의미)

### 다.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

- 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 ②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상증규칙 별지 31호 서식 참조)
- ③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 ④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⑤ 주식관련 서류
  - 공익법인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라. 공시기한,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및 오류사항 시정요구

공익법인은 위 공시대상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마.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국세청장은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524, '09. 2. 16)
- ◎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산-1193, '09. 6. 17)

## 7.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법법 §112의 2, 소법 §160의 3)

기부금영수증(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작성대상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 데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 '08.12.31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 '09.1.1. ~ '09.12.31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 '10.1.1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나. 작성·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법법 §76 ⑩, 소법 §81 ⑪)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당초 가산세 적용대상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법개정에 따라 '10.1.1 이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확대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별지25호의 2 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의 경우 연간 출연(기부)금액 50만원 초과분은 출연자별 출연명세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 §112의 2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법 §160의 3 ③)

### 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국기법 §85의5, 국기령 §66 )

국세청장은 비밀유지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①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국세를 추징당하였거나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②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③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개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사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명단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을 공개합니다.

## 8.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 가. 개 요

세무행정이 선진세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세자료가 제대로 수집·활용되어야 합니다. 과세자료는 거래 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협력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의 의무입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를 간과하여 수취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법 §20 ④, 부령 §66의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법 §120의 3)

이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법법 §76⑨, 법령 §120②)

#### 다. 계산서합계표 제출 (법법 §121 ⑤)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법 §76⑨, 법령 §120②)



# IV

##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 85
2. 출연재산 매각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 91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 97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 105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123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 126
7.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시 지켜야 할 일 / 127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 130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 131

## IV.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 ◎ 재재산46014-321, ('95. 8. 17)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공익법인 사후관리 의무위반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하지 않는다는 예규 (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사후관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초래)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출연재산미제출가산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 ∵ 사후관리의무위반시 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상증법 §48 ② 1호 및 상증령 §38)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가. 개 요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 ①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 ②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공익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상증규칙 §10의6 ①)
    - ☞ '00. 12. 29일 법개정('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유사업목적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으며 수익용 재산도 재출연이 가능합니다. (상증령 §38 ② 단서규정)
-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상증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해 두도록 하는 것은 조세지원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사용기간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기한 : '11.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 등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만약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 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  
+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만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잔여재산 중 일부를 다음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증령 §38 ⑨)

-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cf) '09. 2.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의 개념 변경 ('09. 2. 4. 이후 상속·증여 개시분부터 적용)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친족의 범위 : ① + ②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등)임	- ②를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 (다만,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포함)

## 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상증법 §4)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는 당초 출연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 ☞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면제하는 경우('03.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출연자가 해당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이며, 이 기간 중 당초 출연자 및 그 특수 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임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예규

### ◎ 상증통칙 48-38...3 제1호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 ◎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정의

공익목적사업이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함 (재산-884, '10. 11. 26)

### ◎ 주택자금대여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택자금대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875, '10. 11. 24)

### ◎ 고유목적사업 관련 관리비 및 인건비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재산-814, '10. 11. 1)

### ◎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재산-56, '09. 8. 28)

###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함(재산세과-213, '09. 9. 14)

- ◎ 수익사업용 자산의 수리비 지출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재산-428, '09. 10. 09)
- ◎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의미함(재산-3782, '08. 11. 14)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31⑤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4팀-2999, '07.10.18 서면4팀-3003, '07.10.18)
- ◎ 세무조사 개시전 횡령액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수익사업용 재산매각대금을 횡령하였으나 세무조사가 개시 되기 전에 이를 인지하고 횡령액과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의 감소가 없었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심2006중3063, '07. 3. 30)
- ◎ 출연받은 골동품을 당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 (서면4팀-1044, '07. 3. 30)
- ◎ 출연받은 건물을 장학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제도46014-12636, '01. 8. 11)

- ◎ 출연재산 매각대금 횡령시 당초 출연재산 사용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불법매각하고 그 대금을 유출해 고유목적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3년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시점'에 즉시 증여세 추징 대상임 (국심2000서2243, '01. 2. 21)
- ◎ 출연재산 3년내 미사용시 과세요인 발생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  
공익법인이 '90. 9. 25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93. 9. 25 을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으로 해 과세함.(감심98-38, '98. 2. 10)
- ◎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2704, '07. 9. 14)
- ◎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아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서일46014-10254, '01. 9. 28)
-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 등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4팀-1978, '06. 6. 26 서일46014- 10965, '02. 7. 24)
- ◎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 (서일46014-10258, '02. 2. 28)

## 2. 출연재산 매각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상증법 §48 ② 4호, 5호 및 상증령 §38 ④, ⑦)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가. 개 요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식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매각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00. 1. 1일부터는 매각대금으로 일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예, 일시적 요구불 예금 예치)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됩니다.(상증규칙 §10조의 6 ②)

### 나. 매각금액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공익목적사업외 사용금액과 90%의 비율에 미달 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03.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

$$* \text{증여세 과세가액} = \text{출연재산의 평가가액}^{1)} \times \frac{\text{목적외사용금액과 사용기준미달금액}}{\text{매각대금}^{2)}}$$

- 1) 매각금액(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 2)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계산사례

○ 출연받은 건물을 '00.1.1 경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수익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1백만원을 사용하였고, 고유목적 외로 2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증여세 과세가액은?

- (풀이) ① 출연재산의 평가액 = 매각금액(10백만원) - {대체취득자산가액(2백만원+2백만원) + 고유목적사업비(1백만원)} = 5백만원
- ② 매각대금 = 매각금액(10백만원) - 제세금(1백만원) = 9백만원
- ③ 사용기준미달금액  
 = 매각대금사용기준액(9백만원 × 90% = 8.1백만원)  
 - {직접고유목적사용액(5백) + 목적외사용액(2백)} = 1.1백만원
- ④ 증여세과세가액 = ① ×  $\frac{\text{목적외사용(2백)} + \text{③(1.1백)}}{\text{②}}$  = 1.72백만원

다만, '99.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보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3년내에 80%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0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

$$* \text{증여세 과세가액} = \left( \text{매각대금}^{1)} \text{의 사용기준금액} \times \frac{\text{목적외 사용금액}}{\text{매각대금}^{1)}} \right) + \text{미달사용금액}$$

- 1)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사용기준금액 : 매각대금 × 90%)



#### 계산사례

○ 출연받은 건물을 '07.1.1경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수익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1백만원을 사용하였고, 고유목적사업외로 2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증여세 과세가액은?

(풀이) ① 매각대금 고유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text{매각대금}\{10\text{백만원} - \text{제세금}(1\text{백만원})\} \times 90\%] \\ \times \{\text{목적외사용금액}(2\text{백}) / \text{매각대금}(9\text{백})\} = 1.8\text{백만원}$$

② 사용기준미달금액

$$= \text{매각대금사용기준액}(9\text{백만원} \times 90\% = 8.1\text{백만원}) \\ - \{\text{직접고유목적사업액}(5\text{백}) + \text{①}(1.8\text{백})\} = 1.3\text{백만원}$$

③ 증여세과세가액 = ① + ② = 3.1백만원

#### 다. 사용기준금액에 미달사용 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30%, 2년 내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2년 이내에 각각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00. 12. 29 일 이후에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미달사용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매년 사용기준

적 요	사용비율	미달 사용하는 경우
1년 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2년 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3년 이내	90%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계산사례

12월말 공익법인인 A법인이 '07. 5. 1 출연받은 건물을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07년도에 고유목적사업에 2백만원, '08년도에 2백만원, '09년도에 1백만원 사용하였고, '10. 5. 1 에 고유목적사업 외로 1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0년도 중에는 고유목적사업에 1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가산세 및 증여세액은?

(풀이)

일 자	적 요	금 액	누적 사용비율	비 고
2007. 5. 1	매 각 대 금	9백만원		
2007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2백만원		
2008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2백만원	44%	
2009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1백만원	55%	
2010. 5. 1	목 적 외 사 용	1백만원		
2010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1백만원	66%	

\* 계산편의상 소숫점이하 생략

- ① 2008년도 :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1차년도의 합계액이 4백만원으로 매각대금 사용비율 44%(4백만원/9백만원)로서 30%을 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 ② 2009년도 : 사용기준미달금액 = 9백만원 × 60% - 5백만원 = 40만원  
 가산세액 = 40만원 × 10% = 4만원

③ 2010년도

i)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

$$\begin{aligned} \text{증여세과세가액} &= \text{매각대금의 } 90\% \times \text{목적외사용금액/매각대금} \\ &= (9\text{백만원} \times 90\%) \times (1\text{백만원}/9\text{백만원}) = 90\text{만원} \end{aligned}$$

※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일 '10. 5. 1 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ii) 사용기준미달금액 = 9백만원 × 90% - 0.9백만원 - 6백만원  
 - 4만원(가산세) = 116만원

iii) 증여세액 = (90만원 + 116만원) × 10% = 20만6천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처리 요약

처분유형	법인세 과세소득	당기 순이익	운용 소득	사후관리
고유목적 사 용	3년 사 용	×	×	매각금액 3년내 사용
	3년 미사용	○	×	
미 사 용	○	×	×	매각금액 3년내 사용
수익사업용 사 용	○	○	×	매각금액 3년내 사용

분석》 ① 출연재산은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②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것 포함)된 것의 매각금액은 매각일로부터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③ 출연받은 채로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다가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금액은 매각일로부터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 영 제38조 제4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 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상증통칙 48-38...4 ②)



## 관련예규

### ◎ 매각대금 사용의무 적용 대상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재산-548, '10. 7. 26)

###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가 교인 등에게 대여기간 6개월 이상으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213, '09. 9. 14)

###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재산-3957, '08.11. 25)

###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무와 상종법상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는 별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서면2팀-1060, '08. 5. 30)

### ◎ 종교단체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현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현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재산-322, '08. 2. 25)

### ◎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 적용대상 재산

공익법인에 대한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4팀-2755, '06. 8. 10)

###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상증법 §48 ② 3호, 5호 및 상증령 §38 ⑤, ⑥)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가. 개 요

「직접공익목적사업」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00. 12. 29 일 법개정 전에는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면서 이 중 의사·보모·사서·학교의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하였으나,

'00. 12. 29 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계기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상증령 §38 ⑤)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text{사용기준금액} : (\text{A} - \text{B} + \text{C}) \times 70\%$$

-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
    -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 출연재산 양도차익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
    -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됨)
  - Ⓑ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 ◎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상증통칙 48-38...4]
- 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④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출연재산 매각금액·출연받은 재산·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증통칙 48-38-3 3호)

## 2)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상증령 §38 ⑥)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은 당해연도와 직전 4개 사업 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등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사업연도에 미달사용금액이 있더라도 운용소득과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하여 그 사용금액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 계산사례

- '9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12월말 법인)의 매년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10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당해년도)	5년 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100	120	100	50	80	90.0
② 사용의무기준금액 → ①×70%	70	84	70	35	56	63.0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100	120	70	40	50	76.0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미달	적합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말함

○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 2010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기준에 미달

-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볼 경우

사용실적 76백만원이 사용의무기준 63.0 [(70 + 84 + 70 + 35 + 56) ÷ 5] 백만원을 초과  
 하므로 세법상 사용의무 위반 아님 ⇨ 2010년의 운용소득 사용의무 충족

**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령 §40 ① 2호의2)

$$* \text{증여세 과세가액} = \text{출연재산의 평가가액}^1 \times \frac{\text{목적외사용금액}}{\text{운용소득금액}}$$

1)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 출연재산의 평가(상증령 §40 ① 2호의2, 상증규칙 §13 ②,③)**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함으로써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 중 1년 이상 보유한株式이 있는 경우 그株式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출연재산의 평가** [상증통칙 48-40...8]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株式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株式을 말한다.

## 라.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계산사례

-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여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7억원 중 4억원만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 미사용한 경우  
 〈해설〉 3억원(미달사용액)×10%(가산세율) = 3천만원  
 ☞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되 미사용액 (3억-0.3억원=2.7억원)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합니다. (상증령 제38조 제5항 후단)
- '9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 (12월말 법인)의 매년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10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 그리고 2010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90백만원(이월금액 제외)인 경우 2011년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당해년도)	2011년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100	120	100	50	80	90
② 사용의무기준금액 → ①×70%	70	84	70	35	56	?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80	85	70	40	20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미달	

#### ○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 2009년 당해사업연도 기준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사용의무기준에 미달(미달금액 36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 : 사용실적이 59.0[(80 + 85 + 70 + 40 + 20) ÷ 5] 백만원으로서 사용의무기준 63.0[(70 + 84 + 70 + 35 + 56) ÷ 5] 백만원에 미달(미달금액 4백만원)  
 ⇒ 당해연도기준, 5년 기준 모두 미달하지만 미달사용액이 적은 5년 기준을 적용하며 미달사용액은 4백만원임

○ 가산세 추징

- 미달사용액(4백만원) × 10% = 0.4백만원(가산세로 추징)
- 2010년 운용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 : 4백만원 - 0.4백만원 = 3.6백만원

○ 2011년 사용의무 기준금액

- 당해사업연도 기준 : (90 + 3.6) × 70% = 65.52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 : (84 + 70 + 35 + 56 + 65.52) ÷ 5 = 62.104백만원

 **추가사례**

상기의 계산사례의 추가로 2011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이 30백만원이고, 2011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100만원(이월 포함금액 제외)인 경우 2011년에 추징할 가산세와 2012년 운용소득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120	100	50	80	90	100*
② 사용의무기준금액 → ①×70% ('99. 12. 31 이전 50%)	84	70	35	56	?	??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85	70	40	20	30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적합	적합	미달		

\* 2012년에 ①칸에 올 운용소득은 전년도(2011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임

○ 2011년 가산세 추징

- 2011년 당해사업연도 기준 미달사용금액 : 65.52 - 30 = 35.52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 미달사용금액 : 62.104 - [(85 + 70 + 40 + 20 + 30) ÷ 5] = 13.104백만원(→절사 : 13.10백만원)  
⇒ 당해사업연도 기준, 5년 기준 모두 미달하지만 미달사용액이 제일 적은 5년 기준을 적용하며 미달사용액은 13.1백만원임
- 가산세액 13.1백만원 × 10% = 1.31백만원
- 이월 추가 의무사용 기준금액 : 13.1 - 1.31 = 11.79백만원

- 2012년 사업연도 사용의무 기준금액
  - 2012년 당해사업연도 기준 :  $(100 + 11.79) \times 70\% = 78.253$ 백만원
  - 5년간 평균사용금액 기준 :  $\{70 + 35 + 56 + \{(90 + 3.6) \times 70\%\} + \{(100 + 11.79) \times 70\%\}\} \div 5 = 60.9546$ 백만원



### 관련예규

◎ 반환받은 운용소득의 사용의무기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3119, '07.10.31)

◎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운용소득 사용의무 위반여부

-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4팀-1899, '06. 6. 21)

◎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273, '09. 9. 21)

- ◎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과 운용소득과의 관계  
공익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임 (서면4팀-665, '08. 3. 14)

◎ 운용소득의 범위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재재산46014-40, '02. 2. 15 )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대상 여부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과 그 소득에서 공익사업에 지출한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운용소득과 같은 조 제5항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18, '03. 1. 29)

◎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임 (서일46014-11679, '02. 12. 12)

◎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은 전체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 46014-630, '95. 3. 15)

◎ 운용소득의 범위

출연재산 운용소득에는 출연재산 매각금액(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함)은 제외하는 것임 (재산-601, '10. 8. 17)

◎ 공익법인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직전사업연도 미달사용금액 가산)의 70% 이상을 직접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재산-366, '10. 6. 4)

##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 가. 개요

구분	판정시기	초과지분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과세내용
취득	출연받을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시	5% 또는 10% <sup>2)</sup>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b. 성실공익법인 <sup>1)</sup>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c.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출연받고 d.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동시충족하는 경우 과세제외) e. 출연받은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 <sup>3)</sup>	초과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보유	'96. 12. 31 현재 기준	5%	a-1. 성실공익법인 <sup>1)</sup> 인 경우 또는 a-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초과보유분 가산세부과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30% 또는 50% <sup>4)</sup>		초과보유분 가산세부과

#### 1) 성실공익법인의 개념

'07. 12. 31일 이전	'08. 1. 1일 이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① 요건(90%)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상증령 §42 ①)	①~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성실공익법인(상증법 §16 ②)

- ① 운용소득의 80% \*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③ 외부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사용    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

\* 운용소득 사용비율 개정 : '10.2.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분부터 적용(중전 : 90%)

- 2) 예외적으로 성실공익법인(위 ①~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의 경우 10% 초과분만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08. 1.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 출연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 그 초과분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시 과세제외
- 4) 예외적으로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의 세가지 요건('08. 1. 1일 이후 적용되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③④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0%가 아닌 50%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

## 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증법 §48 ①, 상증령 §37)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출연한 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1) 초과여부의 판정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다음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자시킨 경우 감자를 위한 주총결의 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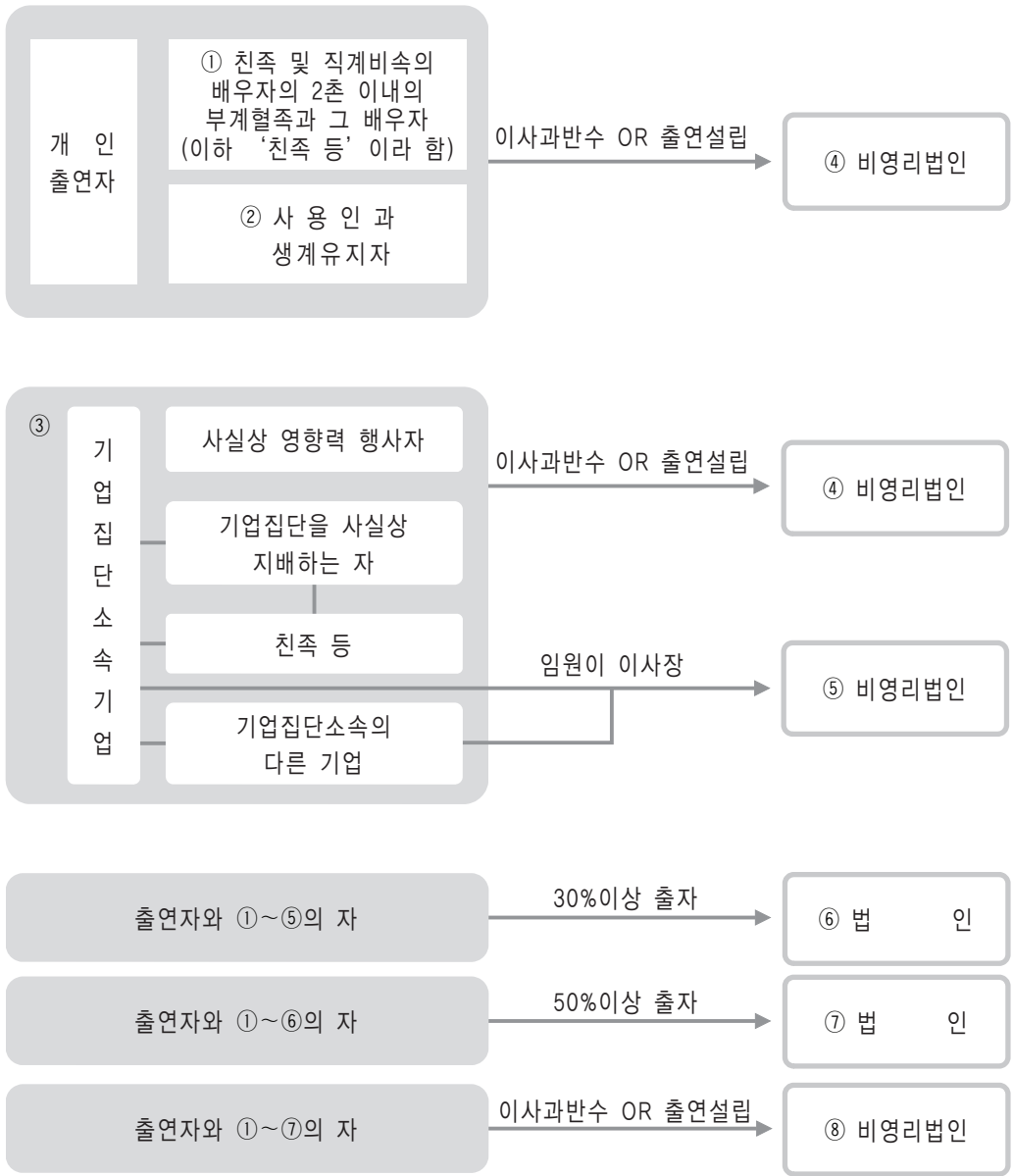
$$[\text{A} + \text{B} + \text{C} + \text{D}] \leq \text{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또는 10\%)}$$

- Ⓐ :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K법인의 주식
- Ⓑ :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 Ⓒ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 Ⓓ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상증령 §37 ⑦ 3호)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령 §37 ② 전단, 상증령 §19 ②)

\* 출연자와 다음 ① ~ 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①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

☞ '0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의 개념 변경  
 다만, 친족의 개념만을 변경한 것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변동 없음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친족의 범위 : ① + ②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등)임	- ②를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 (다만,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포함)

②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출연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사용인(상증령 §13 ⑩ 2호, 상증규칙 §4) :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③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①의 관계에 있는 자

④ 출연자와 ① 내지 ③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③ 본문 또는 ③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출연자와 ① 내지 ⑤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⑦ 출연자와 ① 내지 ⑥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⑧ 출연자와 ① 내지 ⑦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2) 초과시 증여세 과세방법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일 현재 5%를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07.12.31. 법률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5% 초과취득 제한규정을 10%로 완화하였습니다.(☞ '08. 1. 1. 이후 주식 출연분부터 적용)

## 3)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제외하는 경우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5% 또는 10%를 초과하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 b.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 c.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는 경우로서
- d. 주무부 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0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 과세제외하는 4가지 요건 중 b 요건 보충설명

#### ○ 성실공익법인

주식의 취득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아래 5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③ 외부감사 이행
-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 ⑤ 결산서류등 공시이행

cf) '07. 12. 31일 이전의 성실공익법인 개념(상증령 §42 ①)과 '08. 1. 1일 이후의 성실공익법인 개념(상증법 §16 ② 및 상증령 §13 ③)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 운용소득 사용비율 개정 : '10. 2. 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발생분부터 적용(종전 : 90%)

'07. 12. 31일 이전	'08. 1. 1일 이후
① ~ ⑤의 요건 중 ① 요건(90%)만 충족 하면 성실공익법인 (상증령 §42 ①)	① ~ 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성실공익법인 (상증법 §16 ② 및 상증령 §13 ③)

cf) 성실공익법인 요건 보완(대통령령 제20621호 시행령 부칙 §3② ③ 신설)

공익법인이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2008년에 대한 회계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면 주식의 출연일 현재 위 ③ ⑤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개정이유

'08. 2. 22. 자로 신설된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의 판정을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회계감사나 제3호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는 당해 과세연도 경과 후에 가능하므로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이 불가능 따라서 2008년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면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제1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 ② “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 ④ “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과세제외하는 4가지 요건 중 c 요건 보충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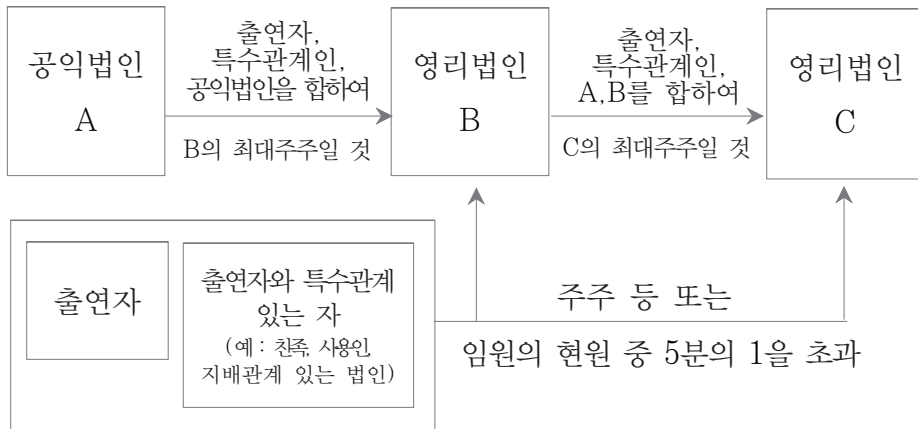
○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이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제외)가 주주 등 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포함)가 최대주주인 경우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제외)가 주주 등 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

○ 그림에 의한 설명

- 공익법인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 (물론 c요건 외 a, b, d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과세제외)



-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예외를 인정한 이유 : 공익법인의 출연자(특수관계인 포함)가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간접지배할 우려가 없으므로 주식보유한도에 예외를 인정

예1) 공익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일 수 없으므로 허용

예2) 甲그룹의 사주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乙그룹 소속법인 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 경우는 간접지배우려가 없으므로 허용

예3) 그러나 甲그룹의 사주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甲그룹 소속법인 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간접지배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

#### 4) 성실공익법인의 10% 초과출연분 과세제외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 b. 성실공익법인 등이(공익 법인 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
- c.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 d.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출연자와 상증령 제13조 제10항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11. 1. 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

이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순수 기부 목적 주식 출연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3년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관련예규

##### ◎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이사의 범위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이사의 범위에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이사의 선임 등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함(재산-125, '09. 9. 3)

##### ◎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아닌 학교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하지 아니함(재산-63, '09. 1. 8)

##### ◎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함(재산-63, '09. 1. 8)

- ◎ 성실공익법인 판정에 있어 운용소득 90% 이상 사용의무 이행여부 판단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 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4팀-1336, '08. 6. 2)
- ◎ 운용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여부  
 운용소득이 발생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말까지 운용소득의 90%이상 사용치 않으면 전년도 사업연도말에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4팀-1247, '08. 5. 23)
- ◎ 성실공익법인이었던 공익법인이 추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서면4팀-1385, '08. 6. 10)
- ◎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해당여부
  -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3772, '08. 11. 14)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재산-3675, '08. 11. 7)
- ◎ 5% 초과시에도 과세제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재산-959, '10.12.16)

◎ 5% 초과여부 판정방법 및 시기

-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서면4팀-45, '08. 1. 8)
-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4팀-30, '08. 1. 7)

**다.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 §48 ② 2호, 시행령 §3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도 “나”의 “1)의 경우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초과여부의 판정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 다음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자시킨 경우 감자를 위한 주총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text{A} + \text{B} + \text{C} + \text{D}] \leq \text{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또는 10\%)}$$

- Ⓐ : 당해 공익법인이 취득하는 K법인의 주식
- Ⓑ :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 주식
- Ⓒ : K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 Ⓓ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 2)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상증령 §37 ② 후단)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

1. 107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⑥, ⑦에 해당하는 법인
2. 1호의 법인과 107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①~⑤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3) 초과시 증여세 과세방법

5%(성실공익법인은 10%, '08.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령 §40 ①2호)

## 4) 5% 또는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제외하는 경우(① 또는 ②)

- ①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5% 또는 10%를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5% 초과 출연분 과세제외하는 경우와 동일, '0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 b.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 c.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 d. 주무부 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②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취득하게 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경우 예외 인정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및 취득 제한규정 변천

- '90. 12. 31 이전 : 주식에 대한 규제 없음
- '91. 1. 1 ~ '93. 12. 31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  
→ '90. 12. 31 이전에 20%를 초과하여 출연 또는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 '94. 1. 1 이후 :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 '93. 12. 31 이전에 5%를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 '08. 1. 1 이후 :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다만,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주식출연·취득제한을 10%로 완화)



**관련예규**

-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552, '09. 3. 18)
  -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산-883, '10. 11. 26)
- ◎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기준 완화에 따른 5년 평균액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768, '10. 10. 19)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 공익법인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서면4팀-3004, '07. 10. 18)
- ◎ 출연 또는 취득제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의미하는 것임 (재산-347, '10. 5. 28)
- ◎ 5%(또는 10%) 초과여부 판정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됨(재재산-417, '05. 10. 18)
- ◎ 5% 초과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93.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94. 1. 1 이후 유상증자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5% 초과지분의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재삼 46014-872, '96. 4. 3)
- ◎ 5% 초과분 과세제외 사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재산-204, '10. 3. 30)
- ◎ 동시 출연시 5%(10%) 초과분 산정방법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공익법인 등(A,B,C)에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성실공익법인과 B성실공익법인은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은 3%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재산-420, '10. 6. 21)

## 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상증법 §49)

'90. 12. 31과 1993. 12. 31 상속세법 개정시 각각 발행주식수의 20%와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개정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동일종목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기 보다는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 보유하여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고,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6. 12. 31 현재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01.12.31까지)내에, 5% 초과 20% 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99. 12. 31 까지)내에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토록 하는 5% 초과보유주식 매각의무기준을 '96.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신설하였습니다.

### 1) 5% 초과보유주식의 판정 (상증령 §42 ⑤)

$$[\text{A} + \text{B}] \leq \text{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 :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K법인)의 주식수

Ⓑ :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및 K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K법인의 주식

☞ 총발행주식수란 당해 내국법인(K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상증법 §16 ② 본문)

### 2) 주식 처분유예기간

- 5% ~ 20% 이하 보유 : 3년내 → '99. 12. 31 까지 처분

- 20% 초과보유 : 5년내 → '01. 12. 31 까지 처분

### 3) 주식매각의무 적용제외 공익법인 등

다음의 공익법인은 주식매각의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성실공익법인

109쪽의 성실공익법인 개념 참조

\* '07.12.31일 주식취득·보유제한규정이 일부 완화(5%→10%, 30%→50%) 되었으나  
동 주식매각의무의 경우 완화된 내용이 없음에 주의할 것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

-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② : “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③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④ : “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4) 주식 초과보유분 매매각에 대한 가산세 부과(상증법 §78 ④)

공익법인 등이 주식처분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그 보유기준(5%)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text{가산세} = 5\% \text{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times 5\%$$

\*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관련예규**

◎ 공익법인 등이 '97. 1. 1 이후 내국법인의 주식 5%를 초과 취득해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규정은 적용 안 됨

(재산상속46014-849, '00. 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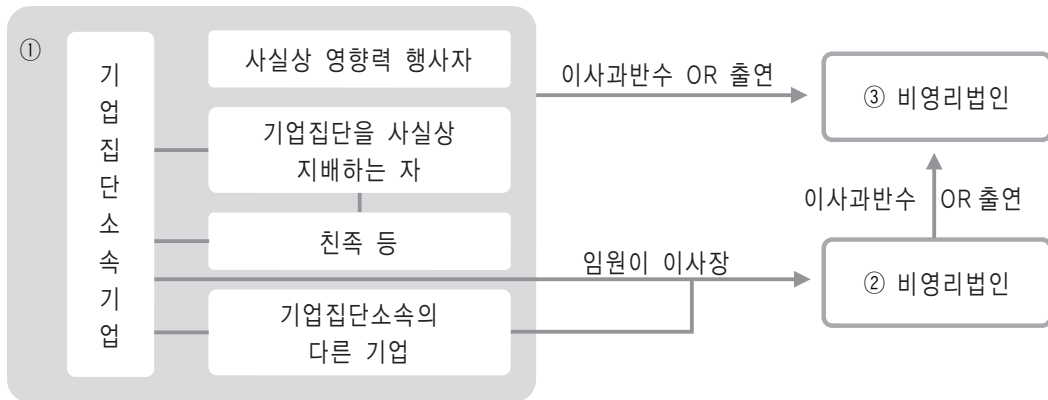
◎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해 2 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주식수 산정시, '성실공익법인' 보유분은 제외됨 (재재산46014-81, '01. 3. 21)

### 마.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상증법 §48 ⑨)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기업 주식 5% 또는 10% 이상의 보유 금지의무 외에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예외적인 경우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99.12.28 개정시 신설되었습니다.

#### 1)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①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 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 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② 상기 ①의 본문 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2) 초과보유분에 대한 주식 등 처분유예기간 (법률 부칙 제6048호 §7 ③)

- 그 초과분 중 1/2이상은 '00. 12. 31 까지
- 나머지는 '01. 12. 31 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3)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⑦)

공익법인이 주식처분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총자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50% 완화규정은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가산세 = 30%(또는 50%)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 4)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상증령 §38 ⑬)

초과하는 주식 등의 가액 = ㉠ - (㉡ × 30% 또는 50%)

- ㉠ : 이동평균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 ㉡ : 공익법인 등의 총 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함)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 가액을 가산한 가액

## 5) 가산세 부과 예외

다음의 공익법인에게는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 성실공익법인

109쪽의 성실공익법인 개념 참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

-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② : “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③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④ : “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관련예규

◎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적용

공익법인 등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바, 당해 주식 등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함(주식(출자지분)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서일46014-11705, '03. 11. 25)

cf)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한다는 서일46014-11301('03. 9. 17)는 잘못된 예규임

◎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주식가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즉 내국법인 주식에만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이 적용됨(서면4팀-441, '05. 3. 24)

◎ 계열기업 주식보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 해석사례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서면4팀-3490, '07. 12. 6)

##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99. 12. 28 신설)

### 가. 개 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①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 ② 시행령 제38조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 등의
- ③ 현재 이사 수(5명 이하인 경우 5명으로 본다)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 ④ 이사가 아닌 임·직원(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제외)으로 되는 경우

\* 임·직원에는 이사를 제외함(상증법 §48 ⑧)

\* 가산세가 부과되는 임·직원 예외범위 확대 (08. 2. 22.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이전	개정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li> <li>- 학교의 교사</li> <li>- 고아원·탁아소의 부모</li> <li>- 도서관의 사서</li> <li>-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중전과 동일)</li> <li>- 학교의 교직원*</li> <li>-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li> <li>- 도서관의 사서(중전과 동일)</li> <li>-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li> <li>-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신설)</li> </ul>

\* 기존 학교의 교사 외 교장, 교감, 총장, 학장, 직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학교의 직원은 학교회계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자에 한함

### ◎ 이사의 범위 [상증통칙 16-13...4 ②]

이사에는 이사회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 나. 출연자의 범위 (상증령 §38 ⑩)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

### 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증령 §38 ⑩)

107쪽의 “특수관계자 범위”와 동일합니다.

### 라.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범위 (상증령 §38 ⑪)

1. 107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③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107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④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107쪽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⑤ 및 ⑧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마. 가산세 부과 유예기간 ('99. 12. 28 법률 제6048호 부칙 §7 ②)

- '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 '99. 12. 31 현재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 중 1/2이상은 '00. 12. 31 까지
- 나머지는 '01. 12. 31 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기준초과(1/5) 이사의 가산세에 대해서만 유예규정이 있으며, 임직원의 가산세에 대한 유예규정은 없음

### 바. 이사 초과 가산세 (상증법 §78 ⑥)

- 이사 수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단,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와 관련된 경비는 제외

-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 관련예규

◎ 이사 기준 초과시 의료법인은 가산세 부과 제외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으로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료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재산-299, '10. 5. 17)

◎ 이사 초과 가산세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재산-1119, '09. 6. 5)

◎ 공익법인 등의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출연자별로 판단함 (서면4팀-333, '07. 1. 24)

◎ 이사 현원이 16명인 경우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이사의 수는 3명이며, ‘학교의 교사’의 범위에는 대학교의 교수 등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4팀-84, '05. 1. 11)

##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상증법 §48 ⑩)

'00.1.1부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가.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120쪽의 마 1)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나. 광고·홍보의 범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 ② 팸플릿·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 다. 광고·홍보에 대한 가산세 (상증법 §78 ⑧)

- 위 나의 ①의 경우 :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 위 나의 ②의 경우 : 당해 행사비용 전액

## 7. 자기내부거래(Self - Dealing)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③, 상증령 §39)

자기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가. 과세대상 자기내부 거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예 : 건물의 임대, 금전소비대차 등)에는 “다.증여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기내부 거래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 유형

- 출연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 \*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

-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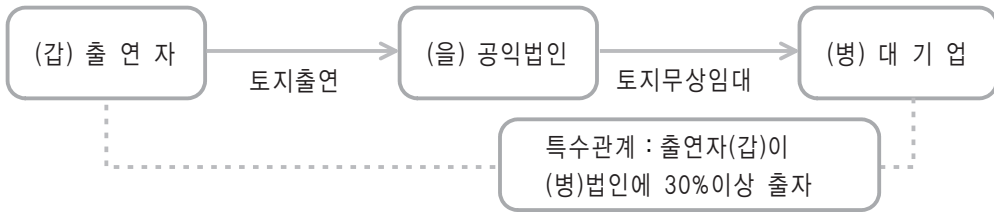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범위**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 \*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4. 출연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5. 출연자의 사용인
6.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7.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시행령 제13조 제12항 참조)
8. 출연자가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
9. 출연자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자기내부거래 예시**



☞ 영리법인(병)의 주주(갑)이 공익법인(을)에 토지를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 가액불산입을 하고 공익법인은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임

◎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상증통칙 48-39...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증여세 과세방법

-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 당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통칙 48-39...6]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당해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당해 출연재산가액  $\times \frac{(\text{정상적인 대가} - \text{실제 지급한 대가})}{\text{정상적인 대가}}$
  - ② 삭 제
  -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관련예규

- ◎ 출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 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함(서일46014-10948, '02. 7. 22)

##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상증법 §48 ② 6호, 상증령 §38 ⑧ 2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생지·직업·학연 등에 의하여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시 또는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대부분의 장학회가 여기에 해당됨
- ☞ 공익법인이 특정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동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국심2003서1779, '03.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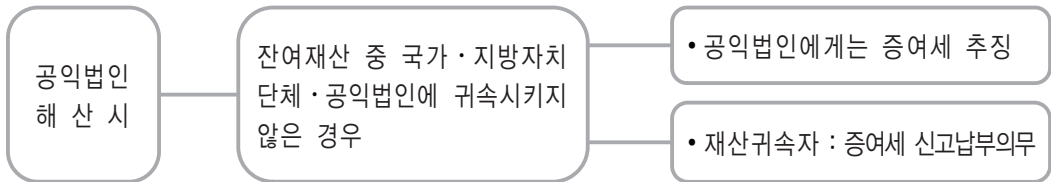
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 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그 공익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수혜자범위의 한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재산-288, '10. 5. 13)

##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② 6호, 상증령 §38 ⑧ 1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잔여재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잔여재산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제외됨 ('01. 1. 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 ⇨ '06. 12. 30일 개정시 삭제됨(일몰도래)

cf) 사립학교법 §35조의2 규정도 일몰도래로 삭제됨

### 나.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하여 증여세(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예규

-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산-840, '09.11.24, 서일46014- 10399, '01. 11. 2)
- ◎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01. 1. 1 이후 증여세 결정분부터는 학교법인에게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제도46014-11768, '01. 6. 29)
- ◎ 농어촌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를 폐교조치하면서 그 잔여재산을 '03. 12. 31 이전에 출연자의 자녀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1270, '02. 9. 27)
- ◎ 특정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다수의 다른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재산-345, '10. 5. 28)
-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거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산-1116, '09.12.24)

# V

## 부 록

1.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 135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및 보고서식 / 151



## 1.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구분	일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대상 법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이상 공익법인
제출 대상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36 페이지)</li> <li>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138 페이지)</li> <li>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140 페이지)</li> <li>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142 페이지)</li> <li>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144 페이지)</li> <li>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146 페이지)</li> <li>7. 이사 등 선임명세서(148 페이지)</li> <li>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50 페이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156 페이지)</li> <li>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158 페이지)</li> <li>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160 페이지)</li> <li>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162 페이지)</li> <li>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 명세서(164 페이지)</li> <li>6.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166 페이지)</li> <li>7. 보유부동산 명세서(168 페이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수동제출)</li> <li>-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등을 추가제출 하여야 함</li> <li>-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제출제외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하여야 함</li> </ul>	
보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 (전자제출 가능)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 (수동제출)
제출 제외 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li> <li>2. 총자산가액 10억 미만 공익법인</li> <li>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li> <li>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li> </ol>

\* 시행규칙이 확정전으로 신고 시 확정서식 확인 필요(국세청 홈페이지 등)



(뒤쪽)

## 작성 방법

### 1. 인적사항(①~⑫)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바. ⑪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회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

사. ⑫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같은조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 2. 자산보유현황(⑬~⑱)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나. ⑬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⑲~㉘)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경비 등 비용을 적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음)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㉑~㉓): ㉑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㉒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3호), ㉓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적습니다.

(2) 부동산(㉔~㉖):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제5호)을 적습니다.

(3) 기타수익사업(㉗): 부동산임대 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제5호)을 적습니다.

(4) 고유목적사업(㉘):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금액

(앞쪽)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연도																
구분	③ 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	④ 재산종류				⑤ 용도	기간		⑧ 금액			⑨ 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	⑩ 사용금액			⑪ 해당연도 사용금액	⑫ 계 (⑩+⑪)	⑬ 기준미달 사용금액 (⑨-⑫)
		분류 코드	과목명	용도	⑥ 사용 시작일		⑦ 사용 종료일	⑧ 금액	⑩ 사용금액	⑪ 해당연도 사용금액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364mm × 257mm (일반용지 60g/㎡ (제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기입하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의무기한 :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전액사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이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 70%사용, 매각대금은 3년 이내 90%사용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기입하지 아니하고,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
3.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입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12)만 기입합니다.
4. ④재산종류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기입합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6. ⑥사용시작일·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기입합니다.  
 예) 현금 10억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3.1 ~ '06.2.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⑮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⑦매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⑨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⑧금액과 동일하게 기입하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사용실적란(또는 5년간의 평균)의 ④사용기준액을 기입하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⑧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⑩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⑪해당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란 각 합계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⑪해당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연도의 사용실적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09. 4. 23>

(앞쪽)

<b>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b>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 사업연도 구분	④ 출연일	⑤출연자	출 연 재 산				⑪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⑥ 주민등록번호 등	⑦ 종류 코드    과목명	⑧ 소재지	⑨ 수량 (면적)	⑩ 가액		⑫ 사용 금액	⑬ 사용처
⑭ 당해 사업연도	-	소액계 -	-	-	-	-	-		
							-		
							-		
							-		
	합 계							-	-
⑮ 직전 사업연도									
	합 계								-
⑯ 직직전 사업연도									
	합 계								-

(뒤쪽)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해당 사업연도 사용분)를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으로 적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금년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적지 않습니다.
3. 소액계의 ⑩가액란에는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은 제외)가 있는 경우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④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적습니다.
5. ⑤출연자란은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고 ⑥주민등록번호등란에는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6. 출연재산란(⑦~⑩)은 아래의 설명에 따릅니다.
  - 가. ⑦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 나. ⑧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에는 적지 않습니다.
- 다. ⑨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 라. ⑩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적습니다.
7. ⑫해당사업연도 사용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⑬해당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09. 4. 23>

(앞쪽)

<b>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b>										
① 공 익 법 인 명					② 사 업 연 도					
③ 매 각 연월일	매 각 재 산					⑧ 사 용 기 준 금 액 [⑦ × 30 (60, 90) /100]	사 용 내 역			⑫ 미 사 용 금 액 (⑧-⑨-⑩)
	④종류		⑤ 소 재 지	⑥ 수 량	⑦ 매 각 금 액		⑨ 직 전 사 업 연 도 까 지 의 사 용 금 액	해 당 사 업 연 도		
	코드	과 목 명						⑩ 사 용 금 액	⑪ 사 용 처	
합 계										

(뒤쪽)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3.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4. ⑥수량란에는 부동산은 “m”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m<sup>2</sup>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5. ⑦매각금액란은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X1년 4월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1차연도('X2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X3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X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⑩해당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⑪해당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9. ⑫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10. 3. 31>

(앞쪽)

<b>운용소득 사용명세서</b>							
① 공 익 법 인 명				② 사 업 연 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 분	⑦ 해 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 년 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 사용기준액  (③ × $\frac{70}{100}$ )							
⑤ 1년 내 사용실적							
⑥ 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 득 금 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 유 목 적 사업준비금	⑮ 기타	⑯ 소 계 (⑭+⑮)	⑰ 출연재산 양도차익	⑱ 법인세 등	⑲ 이월결손금	⑳ 소 계 (⑰+⑱+⑲)
⑳ 차감감소액 (⑬+⑯-⑳)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㉕ 해당 사업연도 운 용 소 득 (㉑+㉒)			
	㉑ 기준미달사용액	㉒ 운 용 소 득 미달사용가산세	㉓ 소 계 (㉑-㉒)				

(뒤쪽)

## 작성방법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⑤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1)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급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 라. ⑰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 마. ⑱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바. ⑲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사. ⑳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적으며,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아. ㉑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뒤쪽)

## 작성방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 (⑥계열법인여부란, 1. 여, 2. 부로 기재)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⑧지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frac{\text{⑦주식수}}{\text{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times 100$$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매입·유상증자·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⑫장부가액란은 대차대조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⑬총재산가액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의 가액에 ⑩취득가액과 ⑪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frac{\text{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⑩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text{⑬총재산가액}} \times 100$$



(뒤쪽)

## 작성 방법

1. 이사 등 선임명세(㉠~㉩)란에는 공익법인 등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기입합니다.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21>)란은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 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직접·간접 경비 명세를 기입합니다.
    - ※ 이사 또는 임원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기입합니다.
  - 나.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교사 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그 해당직원의 경비 명세를 기입합니다.
3. ㉪비고란 및 <21>비고란에는 이사·임원·직원을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개정 2010. 3. 31>

<b>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b>									
공익법인명			사 업 연 도						
특정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특정기업 소유주식수	⑤ 계 정과 목	⑥ 행 위 내 용	지출처		⑨ 지출 금액	⑩ 비고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지출 처명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기입합니다.
3.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⑦)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기입하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2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코 드	행위내용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합니다.
2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합니다.

## 公益法人 등의 稅務確認 規程

국세청고시	제1998- 26호 (1998. 12. 1) 신설
국세청고시	제1999- 1호 (1999. 1. 12)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0- 46호 (2000. 11. 27)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2- 8호 (2002. 1. 28)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7- 10호 (2007. 5. 1)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9-102호 (2009. 9. 3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방법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부전문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한다.
3. “세무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법 제50조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장부”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지출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5.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제3조(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 검사를 받은 연도분에 한한다)

**제4조(세무확인사항)** 영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나.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 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 라.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각 연도별사용의무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 마.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 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초과 여부
2.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출연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 나.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등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지출 여부

3.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준수 여부

나.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여부

다.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제5조(세무확인기간)**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① 외부전문가는 제4조에서 규정한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등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는 제1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세무확인서 등에 결산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설립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2.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만, 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3.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상속인”은 “출연자 등”으로 본다.
4.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5.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채무 이외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
6.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8조(외부전문가의 의무 등)** ① 외부전문가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 확인을 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외부전문가는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 까지로 한다.

## 부 칙 (1998. 12. 1)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2)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27)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무확인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확인 사항 및 결과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 및 서식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1. 28)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1)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9.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고시 별지 제1호 서식](2009. 9. 30. 개정)

(앞 쪽)

관리번호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소재지		⑧ 설립일자			
⑨ 사업연도		⑩ 사업목적		⑪ 설립근거법	

(단위 : 원)

1. 자산보유현황	
구분	사업연도 당해연도 (      년)
⑫ 총 자산가액	
자산 종류별	⑬ 토지
	⑭ 건물
	⑮ 예·적금등 금융자산
	⑯ 주식
	⑰ 기타
2. 수입금액 현황	
구분	사업연도 당해연도 (      년)
⑱ 총 수입금액	
수입 원천별	⑲ 금융
	⑳ 부동산
	㉑ 수익사업
	㉒ 기타
3. 세무확인결과	
⑲ 위반금액	㉔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㉕구분	
㉖성명	
㉗사업자등록번호	

구비서류 : 1.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부표 (별지 제2호~제7호)  
 2.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뒤 쪽)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작성요령

### 1. 자산보유현황

- 가. ⑫란의 총자산가액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재합니다.
- 나. ⑬내지 ⑰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당해 계정과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2. 수입금액 내역

- ⑱란의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세무확인결과

- 가. ㉓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나. ㉔란은 세무확인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 가. ㉕란의 구분은 외부전문가의 직업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소 등 소속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나. ㉖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외부전문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법인소속 등의 경우 당해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다. 외부전문가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을 별지로 기재합니다.







(뒷쪽)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작성요령

가. 작성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재산을 기재합니다.

나. ⑥란의 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다. ⑨란의 출연자등과의 관계는 당해 공익법인 또는 출연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라. ⑫란의 사용수익금액은 ⑩란의 정상대가에서 ⑪란의 실제 사용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⑬란의 비교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제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뒷쪽)

###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작성요령

가. 작성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선정이 부적정한 경우를 기재합니다.

나. ④란의 가액은 부적정한 수혜자 선정으로 제공된 재산 또는 경제적이익 등 수혜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⑩란의 출연자등과의 관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이 때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앞 쪽)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고시 별지 제5호 서식](2007. 5. 1. 개정)

사 업 연 도		<b>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b>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단위 : 원, m<sup>2</sup>)

① 재산 종류	출 연 재 산		운 용 현 황			⑩ 적 요			
	② 소 재 지 계	③ 수량 (면적)	④ 출연재산가액	⑤ 구분	⑥ 수익금액		⑦ 적정수익금액	⑧ 유형 ⑨ 금액	
합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97mm×210mm(신문용지 54g/m<sup>2</sup>)

(뒷쪽)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정정명세서 작성요령

가. 작성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 및 수익사업의 내역에 있어 운용·수익사업소득에 대한 탈루사항 등 적출사항을 기재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 사용수익으로 그들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상당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은 제외합니다.

나. ⑦란의 적정수익금액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가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다. ⑧란의 유형은수익금액의 오류 또는 탈루유형을 기재합니다.

(예) 수입이자누락, 매출누락 등

라. ⑨란의 금액은 누락된 수익금액 및 ⑦란의 적정수익금액과의 차액을 기재합니다

마. ⑩란의 적요는 당해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소득의 부정정한 내용의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 - 출연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그 내용 등

- 무수익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 운용상의 부정정한 내용 등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고시 별지 제6호 서식](2009. 9. 30.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단위 : 원)

구	① 분	②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③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④ 비 고
공익목적 사업				
수 익 사업 명				

2. 출연재산 명세 보고등 불이행 내역

(단위 : 원)

구	⑤ 분	⑥ 제 출 부	⑦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⑧ 누락 또는 오류 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출연재산 등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이사 등 선임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근거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m<sup>2</sup>)

(뒤 쪽)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작성요령

###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내역

#### 가.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의 운용내역과 수익사업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합니다.

나. ①란의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명은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 ③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장부 등은 당해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할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주요장부 또는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

### 2. 출연재산 명세보고 등 불이행 내역

#### 가. 작성대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출연 재산명세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별지로 작성합니다



## 공익법인 세무안내

---

발행일자: 2011년 2월 일

발행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집필·편집: 법인세과장      진 경 옥  
   행정사무관      김 정 주  
   세무조사관      강 천 희  
   세무조사관      임 형 태  
   세무조사관      권 충 구  
   세무조사관      문 상 묵

인쇄처: (주)아트팰리스 (02)2277-1088

---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397-1822~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